

의안번호	제 59 호
의 결 연 월 일	2014년 10월 일 (제335회)

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박한범 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4년 10월 2일

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9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14년 10월 2일
발 의 자 : 박한범·엄재창·윤은희
박우양·임순묵·이광진
정영수 의원(7인)

1. 제안이유

- 가. 개업 중인 변호사로 법률고문만 위촉하던 것을 도의회 입법 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등으로 입법고문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
- 나. 의회관련 쟁송 사건과 법률적 사안은 물론 입법적 사안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명칭을 “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”에서 “충청북도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”로 함(안 제명)
- 나. 입법·법률고문의 위촉인원 및 자격요건을 규정함(안 제2조)
 - 1) 의장은 3인 이내의 입법·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음
 - 2) 입법고문은 입법 및 의정 분야 전문가를,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위촉함
- 다. 입법·법률고문의 구체적인 자문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라. 입법·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재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5조)
- 마. 입법·법률고문의 위촉해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(안 제6조)
- 바. 입법·법률고문의 수당 및 소송수임료에 대해서 규정함(안 제7조)

3. 전부개정조례안 : 별첨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비용추계서 : 별첨

다. 규제관련사항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여부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청북도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에 입법·법률고문을 위촉하고 입법 및 법률사안 등에 대한 자문요청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촉) ① 의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인 이내의 입법·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.

1.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
2. 충청북도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

② 법률고문은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.

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.

제3조(자문사항) 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치법규의 제·개정 등에 관한 사항
2.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
3.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·처리,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의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

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의회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

2.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사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

3.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의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

제4조(자문요청 등)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처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요청을 의뢰할 수 있다. 다만,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바로 자문요청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고문 또는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위촉기간) 입법·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. 다만,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.

제6조(위촉해제) 의장은 입법·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

2.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

3. 입법·법률고문의 정원 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

4.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

5. 입법·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
6.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7.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
제7조(수당 등) ① 입법·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, 입법·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「충청북도 고문변호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8조(자문실적부 비치)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」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38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승 낙 서

본인은 「충청북도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
바에 따라 귀 의회의 입법(법률)고문직 위촉을 승낙합니다.

20 년 월 일

주 소 :

소 속 :

성 명 : (인)

충청북도의회의장 귀하

【별지 제2호 서식】

제 호

위 촉 장

소 속 :

성 명 :

「충청북도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」 제2조에 따라
귀하를 충청북도의회 입법(법률)고문으로 위촉합니다.

(위촉기간 : 20 . . . ~ 20 . . .)

20 년 월 일

충청북도의회의장 직인

【별지 제3호 서식】

자문처리 실적부

자 문 사 항				처 리 결 과		
연월일	건 명	의뢰인	의뢰내용	연월일	고문인	회신내용

※ 건명란에는 입법자문, 법령해석, 법령자문, 소송사건 등을 기재함.

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쟁송사건 및 법률적 사안은 물론 입법적 사안에 대한 입법·법률 고문의 자문 수행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자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수당 지급
- 기존 법률 고문변호사 1인에서 입법고문 1인 추가로 위촉인원 확대

3. 관련조문

- 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 및 제7조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입법·법률고문 자문 수당 지원

나. 추계 결과

- 입법·법률고문 자문 수당 비용 : 4,800천원/년
 - 고문에게는 매월 20만원의 수당 지급 : 1인당 2,400천원/년
 - 2인 위촉시 4,800천원/년 (= 2,400천원×2인)

다. 재원조달방안

- 의회사무처 자체재원 사용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강 성 택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15년)	2차년도 (2016년)	3차년도 (2017년)	4차년도 (2018년)	5차년도 (2019년)	계
세 입						
세 출	4,800	4,800	4,800	4,800	4,800	24,000
입법·법률고문수당	4,800	4,800	4,800	4,800	4,800	24,000
재원 조달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4,800	4,800	4,800	4,800	24,000
	지방세	4,800	4,800	4,800	4,800	24,000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특별회계						
특별회계						
특별회계						
구·군비						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